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252
------	-----

2019. 2. 25.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8년 10월 16일, 권수정 의원(발의의원 17명)

나. 회부일자 : 2018년 12월 28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19. 2.2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권수정 의원)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조례에 대한 일괄정비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조례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조례상의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조문 개정(안 제2조 외).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조례안의 개요

-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를 포함한 55건의 조례 제명과 조문 중 ‘근로(勤勞)’라는 용어를 ‘노동(勞動)’으로 각각 변경하여 노동의 가치, 존엄성을 존중하고자 발의되었음.

나. 근로와 노동의 개념

-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을 의미하고, “근로자”는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 이에 반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로, “노동자”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을 뜻하며, 고전

경제학에서는 토지, 자본과 함께 “노동”을 생산의 3대 요소로 보고 있음.

- 한편, 우리나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서 “근로”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 구분하고,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노동관계법령에서도 “노동”과 “근로” 사이에 특별한 의미의 차이를 두고 있지 않고 혼용하고 있음.
- 또한,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처럼 정부 부처 또는 직제의 명칭으로 “노동”이라는 용어가 상용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노동민생정책관’을 두고 노동정책을 총괄하고 있음.¹⁾

다. 조례안의 일괄개정 사항

- 조례안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한다는 개념이 내포된 “근로”를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능동적·가치중립적인 개념인 “노동”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노동의 주체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1) 역사적으로도 1923년 5월 1일 시작된 ‘노동절’ 행사는 1963년 「근로자의날제정예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명칭은 ‘근로자의 날’로, 날짜는 3월 10일로 변경되었고, 1995년에 날짜만 다시 5월 1일로 개정되는 등 “근로” 또는 “노동”이라는 용어는 함께 혼용 사용되어 왔음(국가법령정보센터 연혁참고).

〈조례안의 주요 내용〉

조례명	개 정 내 용
1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	- 비정규직근로자 → 비정규직노동자
2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 근로자 → 노동자
3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 근로자 → 노동자, 근로계약 → 노동계약
4 「공동주택 관리 조례」	- 근로자 → 노동자
5 「근로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조례」	- 근로계약서 → 노동계약서
6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 근로자 → 노동자
7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근로복지시설 → 노동복지시설
8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 근로자이사제 → 노동자이사제
9 「근로청소년 보호 및 고용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	- 근로청소년 → 노동청소년
10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근로조건 → 노동조건
11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 근로소득 → 노동소득
1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 피해여성근로자 → 피해여성노동자
13 「보육 조례」	- 보육교직원 근로여건 → 보육교직원 노동여건
14 「사회복지기금 조례」	- 자활근로 → 자활노동
15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 자활근로사업단 → 자활노동사업단
16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 자활근로사업단 → 자활노동사업단
17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자활근로사업단 → 자활노동사업단
18 「생활임금 조례」	- 근로자 → 노동자
19 「성평등 기본조례」	- 근로자 → 노동자, 근로여성 → 노동여성
20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 근로계약서 → 노동계약서
21 「인권 기본 조례」	- 근로 → 노동
22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 근로시간 → 노동시간
23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근로관계법령 → 노동관계법령
24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 근로지원인 → 노동지원인
2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 공공근로요원 → 공공노동요원
2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교육·주거·근로 → 교육·주거·노동
27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근로계약 → 노동계약
28 「청년 기본조례」	- 근로조건 → 노동조건
29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 근로 → 노동, 근로자 → 노동자
30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 청년근로자 → 청년노동자
31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 근로 → 노동
32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근로청소년 → 노동청소년
33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 근로계약 → 노동계약
34 「택시기본 조례」	- 근로 → 노동
3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 근로 청소년 → 노동 청소년
36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근로관계 → 노동관계
37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고용·근로조건 → 고용·노동조건
38 「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 기간제근로자 → 기간제노동자
39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여성근로자 → 여성노동자
40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 근로자 → 노동자
41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 현장근로자 → 현장노동자
42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근로자 → 노동자

조례명		개정내용
43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
44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 근로자 → 노동자
45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 근로자 → 노동자
46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퇴직근로자 → 퇴직노동자
47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284회 정례회 폐지조례안
48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 근로자 → 노동자
49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근로자 → 노동자
50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 도시노동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1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근로자 → 노동자
52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 근로자 → 노동자
5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 상시고용근로자 → 상시고용노동자
5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근로자 → 노동자
55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 근로자 → 노동자

- 최근 고용노동부장관이 종속적 의미의 “근로자” 대신 “노동자”라는 표현을 쓰겠다고 밝힌 데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도 “노동자와 사용자는 동등한 위치에 있지만, 근로자는 사용자에 종속된 개념이기 때문에 노동자라는 이름을 제대로 불러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정부와 정치권에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음.
- 국회에서도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11개의 제명과 조문 중 “근로”를 “노동”으로 각각 개정하는 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음.²⁾
- 또한,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 개정안에서도 노동자의 권리

2)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11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헌법이 “근로”, “근로자”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헌법 개정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이와 연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 이후 현재까지 계류 중임 (2017.11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의원 대표발의).

강화를 위해 일본 제국주의와 군사독재 시대에 사용되어 온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고, 헌법적 의무로 보기 어려운 ‘근로의 의무’를 삭제한 바 있음.³⁾

- 이처럼 “노동”의 용어가 개별 법령이나 정부 부처 명칭으로 상용되고 있고, 일제강점기에 강제 도입된 용어를 청산할 필요성이 크며, “노동”이 부지런함을 강조하는 “근로”보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용어를 변경할 당위성은 인정됨.
- 다만, 조례에서 관계법령의 용어와 달리 사용하는 경우, 다른 개념으로 오인하거나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법령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자치법규 내용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예를 들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에서 ‘비정규직근로자’, ‘근로자’를 직접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 제2조 「서울특별시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에서 ‘비정규직근로자’를 ‘비정규직노동자’로, 안 제3조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3) 국민의 뜻과 시대정신을 반영하기 위해 기본권과 국민주권, 노동자의 권리를 확대·강화하고, 대통령 4년 연임제, 사법제도 개선 방안 등을 담은 헌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으며, ‘근로’를 ‘노동’으로(2018. 3. 26).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서 ‘근로자’를 ‘노동자’로 변경하는 것은 법체계상 부합하지 않고⁴⁾, 자치사무가 아닌 위임 조례의 경우에는 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날 우려도 있음.⁵⁾

- 따라서 법령 조문과 직접 관련이 없는 조례를 대상으로 “근로”를 “노동”으로 변경하고, 법령의 용어 정의를 직접 인용하거나 관계 법령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삭제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음.⁶⁾

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

제2조(정의) 2. "비정규직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과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제4호에서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란 제2호와 제3호의 기관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로 규정함.

5)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위임조례로 근로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당 법령에서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을 “근로복지시설”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설치, 운영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노동복지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조례제정권의 범위에도 벗어날 것임.

6) 근로를 노동으로 변경하는 조례 제·개정 허용 여부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담당관 법률자문 결과 상위법령과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상위법령과 무관한 경우에만 허용한다는 의견(자문1, 자문3)이 갑설, 모두 무방하다는 의견(자문2)이 을설임(2018.10. 입법담당관).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수정안 요지 : 「없음」

가. 수정이유

- 이미 폐지된 조례를 삭제하고, 안 제13조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에서 강제노역 피해에 대하여 적극적 의미를 부여하는 “노동”은 부적절하므로 이를 삭제함.
- 또한, 관련 법령을 직접 인용하고 있는 ‘근로’의 경우는 ‘노동’으로 변경하고 괄호로 관련 법령의 근거 규정을 부연 설명하는 것으로 수정함.

나. 주요 내용

-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를 삭제함(안 제13조).
- 「서울특별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삭제함(안 제48조).
- 관련 법령을 직접 인용하고 있는 ‘근로’의 경우 ‘노동’으로 변경하고 법령의 근거 규정을 명시함.

Ⅵ.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11명, 전원 찬성)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52
----------	-----------

제안년월일 : 2019년 2월 25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강제노역 피해에 적극적 의미를 부여하는 “노동”은 부적절하므로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는 삭제하고, 이미 폐지된 「서울특별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을 삭제하는 한편, 관련 법령을 직접 인용하고 있는 ‘근로’의 경우는 ‘노동’으로 변경하고 근거 규정을 부연 설명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를 삭제함(안 제13조).
- 나. 「서울특별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삭제함(안 제48조).
- 다. 관련 법령을 직접 인용하고 있는 ‘근로’를 ‘노동’으로 변경하고 근거 규정을 부연 설명함(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6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5조, 안 제16조, 안 제18조, 안 제21조, 안 제25조, 안 제34조, 안 제44조, 안 제53조, 안 제56조).

라. 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를 마련함(부칙 제2조).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중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근로계약”을 “노동계약”으로 한다.

2. “비정규직노동자”란 기간제노동자, 단시간노동자(「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를 각각 말한다) 및 파견노동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를 말한다.

안 제3조 중 제2조제4호 중 “수행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노동자”를 “수행하는 노동자(「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로 한다.

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근로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동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근로권”을 각각 “노동권”으로, “근로관계”를 “노동관계”로 한다.

제2조 중 “근로권”을 “노동권”으로, “근로계약서”를 “노동계약서(「근로기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근로계약 문서를 말한다)”로 그 밖에 “근로”를 “노동”으로 한다.

제3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근로권”을 각각 “노동권”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근로권 교육 실시)”를 “(노동권 교육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근로권”을 “노동권”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 중 “근로권”을 각각 “노동권”으로 한다.

안 제7조 중 제2조제1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안 제8조 중 제2조 중 “근로복지시설(이하 “복지시설”이라 한다)”을 “노동복지시설(「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복지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안 제9조 중 제8조 본문 중 “근로자이사의”를 “노동자이사의”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근로자이사의 근로계약”을 “노동자이사의 노동계약(「근로기준법」 제2조제4호의 근로계약을 말한다)”으로, “근로자이사의”를 “노동자이사의”로 한다.

안 제15조 중 제8조제1항제6호 중 “자활근로”를 “자활노동(「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자활근로를 말한다)”으로 한다.

안 제16조 중 제3조제2호라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근로사업단을 말한다)”으로 한다.

안 제18조 중 제2조제1호 중 “자활근로사업단”을 “자활노동사업단(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근로사업단을 말한다)”으로 한다.

안 제21조 중 제39조제1항 중 “근로계약서”를 “노동계약서(「근로기준법」 제2조제4호의 근로계약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로 한다.

안 제25조 중 제2조제2호 중 “근로능력”을 “노동능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근로지원인”이란”을 “노동지원인(「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근로지원인을 말한다)”이란”으로 한다.

안 제34조 중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같은 항 중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을 “노동계약(「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근로자를”을 “노동자를”로, “근로계약서, 근로자”를 “노동계약서, 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근로관계”를 “노동관계”로 한다.

안 제53조 중 제4조제2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로 한다.

안 제56조 중 제4조제3항 중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법상 근로자”를 “법정상 노동자(「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로 한다.

안 제13조 및 안 제48조를 각각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p>제2조(서울특별시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 환경 개선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u>제2조제2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자를”을 “노동자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근로계약”을 “노동계약”으로 한다.</u></p> <p><u>제5조제4항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내노동복지기금”으로, “근로자들”을 “노동자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용역근로자”를 “용역노</u></p>	<p>제2조(서울특별시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의 개정) ----- ----- -----.</p> <p><u>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근로계약”을 “노동계약”으로 한다.</u></p> <p><u>2. “비정규직노동자”란 기간제노동자, 단시간노동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를 각각 말한다) 및 파견노동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를 말한다.</u></p> <p><u>제5조제4항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내노동복지기금(「근로복지기본법」 제2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말한다)”으로, “근로자들”을</u></p>

동자” 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근로자” 를 “노동자” 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근로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근로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 설>

<신 설>

“노동자들” 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용역근로자” 를 “용역노동자” 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

-----.

제2조제4호 중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를 “노동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근로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조례의 개정) --

-----.

제1조 중 “근로권” 을 각각 “노동권” 으로, “근로관계” 를 “노동관계” 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및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근로권”

<신 설>

제7조(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근로자”” 를 ““노동자”” 로, ““근로자를”” 을 ““노동자를”” 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근로자”” 를 각각 ““노동자”” 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을 각각 “노동권” 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근로권 교육 실시)”” 를 ““(노동권 교육 실시)”” 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근로권”” 을 ““노동권”” 으로 한다.

제8조 본문 및 각 호 중 ““근로권”” 을 각각 ““노동권”” 으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의 개정)

-----.

제2조제1호 중 ““근로자란”” 을 ““노동자란”” 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근로자”” 를 각각 ““노동자”” 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제9조(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본문 중 “근로자이사의”를 “노동자이사의”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근로자이사의 근로계약”을 “노동자이사의 노동계약”으로, “근로자이사의”를 “노동자이사의”로 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

-----.

제2조 중 “근로복지시설(이하 “복지시설”이라 한다)”을 “노동복지시설(「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복지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

-----.

제8조 본문 중 “근로자이사의”를 “노동자이사의”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근로자이사의 근로계약”을 “노동자이사의 노동계약(「근로기준법」 제2조제4호의 근로계약을 말한다)”으로, “근로자이사의”를 “노동자이사의”로 한다.

<삭 제>

제명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를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 지원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피해여성근로자에” 를 “피해여성노동자에” 로, “피해여성근로자 문제” 를 “피해여성노동자 문제” 로 한다.

제2조 중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를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 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피해여성근로자” 를 각각 “피해여성노동자” 로 한다.

제4조 중 “피해여성근로자” 를 “피해여성노동자” 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호 중 “피해여성근로자” 를 각각 “피해여성노동자” 로 한다.

제15조(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 중 “자활근로” 를 “자활노동” 으로 한다.

제15조(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의 개정) -----

-----.

제8조제1항제6호 중 “자활근로” 를 “자활노동(「국민기초생활 보

제16조(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라목 중 “자활근로사업단” 을 “자활노동사업단” 으로 한다.

제18조(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자활근로사업단” 을 “자활노동사업단” 으로 한다.

제21조(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중 “근로계약서”

장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자활근로를 말한다)” 으로 한다.

제16조(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의 개정) -----

-----.

제3조제2호라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근로사업단” 을 “자활노동사업단(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근로사업단을 말한다)” 으로 한다.

제18조(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

-----.

제2조제1호 중 “자활근로사업단” 을 “자활노동사업단(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근로사업단을 말한다)” 으로 한다.

제21조(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의 개정) -----

-----.

제39조제1항 중 “근로계약서”

를 “노동계약서” 로 한다.

제25조(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근로능력 “을 “노동능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근로지원인” 이란” 을 “노동지원인” 이란” 으로 한다.

제34조(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근로자” 를 각각 “노동자” 로, 같은 항 중 “근로계약을” 을 “노동계약을”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근로자를” 을 “노동자를” 로, “근로계약서, 근로자” 를 “노동계약서, 노동자” 로 하

를 “노동계약서(「근로기준법」 제2조제4호의 근로계약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 로 한다.

제25조(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의 개정) -----

-----.

제2조제2호 중 “근로능력 “을 “노동능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근로지원인” 이란” 을 “노동지원인(「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근로지원인을 말한다)” 이란” 으로 한다.

제34조(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의 개정) -----

-----.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근로자” 를 각각 “노동자” 로, 같은 항 중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 을 “노동계약(「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을 말한다)”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근로자

고, 같은 조 제4항 중 “근로관계” 를 “노동관계” 로 한다.

제44조(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근로자” 를 “노동자” 로 한다.

제48조(서울특별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청년근로자” 를 “청년노동자” 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도시근로자” 를 “도시노동자” 로 한다.

제53조(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의 개정) 서

를” 을 “노동자를” 로, “근로계약서, 근로자” 를 “노동계약서(「근로기준법」 제2조제4호 근로계약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 노동자”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근로관계” 를 “노동관계” 로 한다.

제44조(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

제2조 중 “근로자” 를 “노동자(「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로 한다.

<삭 제>

제53조(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의 개정) ---

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근로자” 를 “노
동자” 로 한다.

제56조(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의 개
정)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보
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근로자” 를 “노
동자”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다.

<신 설>

-----.

제4조제2항 중 “근로자” 를 “노동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로 한다.

제56조(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의 개
정) -----

-----.

제4조제3항을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법상 근로자” 를 “법령상 노
동자(「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근
로자를 말한다)”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의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구성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와 그 위원은 각각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증진을 위한 조례」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노동자 권익보호위원회와 그 위원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조례에 대한 일괄정비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자치법규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비정규직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근로계약”을 “노동계약”으로 한다.

2. “비정규직노동자”란 기간제노동자, 단시간노동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를 각각 말한다) 및 파견노동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를 말한다.

제5조제4항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내노동복지기금(「근로복지기본법」 제2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말한다)”으로, “근로자들”을 “노동자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용역근로자”를 “용역노동자”로 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제2호, 제3조제1항,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5조제2항, 제5조제5항, 제5조제6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중 “비정규직근로자”를 각각 “비정규직노동자”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제3호,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1항 중 “무기계약근로자”를 각각 “무기계약노동자”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제3호, 제3조제2항, 제5조제3항, 제5조제4항,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기간제근로자”를 각각 “기간제노동자”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근로형태”를 “노동형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로 한다.

제4조 중 “근로하는”을 “노동하는”으로, “근로환경”을 “노동환경”으로 한다.

제5조 제목 “(서울시 등 감정노동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계획의 수립)”을 “(서울시 등 감정노동 종사자 노동환경 개선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근로환경”을 각각 “노동환경”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근로시간”을 “노동시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근로환경”을 “노동환경”으로 한다.

제6조 중 “근로환경”을 “노동환경”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근로환경”을 각각 “노동환경”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근로환경”을 “노동환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근로하는”을 “노동하는”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근로환경”을 “노동환경”으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6조제3호 중 “근로계약”을 “노동계약”으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제1호, 제3조제4항, 제4조제2항제4호, 제6조의2 제목, 제6조의2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 제목 외의 부분제3호, 제6조의2 제목 외의 부분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제8호 및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근로”를 각각 “노동”으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근로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근로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근로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동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근로권”을 각각 “노동권”으로, “근로관계”를 “노동관계”로 한다.

제2조 중 “근로권”을 “노동권”으로, “근로계약서”를 “노동계약서(「근로기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근로계약 문서를 말한다)”로 그 밖에 “근로”를 “노동”으로 한다.

제3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근로권”을 각각 “노동권”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근로권 교육 실시)”를 “(노동권 교육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근로권”을 “노동권”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 중 “근로권”을 각각 “노동권”으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

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근로자란””를 ““노동자란””으로 한다.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중 “근로를 하는 근로자”를 “노동을 하는 노동자”로 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근로자 등 취약근로자”를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로, “근로자의”를 “노동자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근로실태조사”를 “노동실태조사”로 한다.

제9조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10조 제목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근로자가 근로자”를 “노동자가 노동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11조 제목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3장의 제목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를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근로자의”를 “노동자의”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를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

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근로복지시설”을 “노동복지시설”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2조 중 “근로복지시설(이하 “복지시설”이라 한다)”를 “노동복지시설(「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복지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 중 “근로를”을 “노동을”로 한다.

제7조 제목 “(자치구 근로복지시설의 지원)”을 “(자치구 노동복지시설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근로복지시설”을 “노동복지시설”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근로

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근로자이사제”를 “노동자이사제”로, “근로자의”를 “노동자의”로, “근로자와”를 “노동자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까지 중 “근로자이사”를 각각 “노동자이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근로자위원”을 “노동자위원”으로, “근로자의”를 “노동자의”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근로자이사”를 “노동자이사”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근로자이사의”를 “노동자이사의”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근로자이사의”를 “노동자이사의”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근로자이사의 근로계약”을 “노동자이사의 노동계약(「근로기준법」 제2조 제4호의 근로계약을 말한다)”로, “근로자이사의”를 “노동자이사의”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근로자이사”를 “노동자이사”로 한다.

제10조 중 “근로자이사”를 “노동자이사”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근로자이사”를 각각 “노동자이사”로 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근로조건에 있어 근로자이사를 다른 근로자”를 “노동조건에 있어 노동자이사를 다른 노동자”로, “근로자 이사”를 “노동자이

사”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근로자이사”를 “노동자이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근로자이사”를 각각 “노동자이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근로자이사의”를 “노동자이사의”로, “근로자이사로서의”를 “노동자이사로서의”로,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노동계약에 따라 노동”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근로자이사”를 각각 “노동자이사”로 한다.

제14조 중 “근로자이사제”를 “노동자이사제”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 보호 및 고용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

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 보호 및 고용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 보호 및 고용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동청소년 보호 및 고용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근로청소년의”를 “노동청소년의”로, “근로기준”을 “노동기준”으로, “근로청소년의”를 “노동청소년의”로 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근로청소년”을 각각 “노동청소년”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근로청소년””을 ““노동청소년””으로, “근로를”을 “노동을”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근로를”을 “노동을”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근로환경에서 근로”를 “노동환경에서 노동”으로 하고, 같

은 조 제2항 중 “근로청소년”을 “노동청소년”으로, “근로조건”을 “노동조건”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근로청소년의 근로조건”을 “노동청소년의 노동조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조건”을 “노동조건”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근로청소년”을 “노동청소년”으로 한다.

제8조 제목 “(근로청소년 고용 우수업체 추천위원회)”를 “(노동청소년 고용 우수업체 추천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근로청소년”을 각각 “노동청소년”으로 한다.

제9조 제목 “(근로청소년 고용 피해 사례 분석 등)”을 “(노동청소년 고용 피해 사례 분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근로청소년”을 각각 “노동청소년”으로 한다.

제11조 중 “근로청소년”을 “노동청소년”으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근로조건”을 “노동조건”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근로소득”을 “노동소득”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근로의욕”을 “노동의욕”으로, “근로능력”을 “노동능력”으

로 한다.

제13조 삭제

제14조(서울특별시 보육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목 “(보육교직원 근로여건 개선)”을 “(보육교직원 노동여건 개선)”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근로여건”을 “노동여건”으로 한다.

제15조(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 중 “자활근로”를 “자활노동(「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자활근로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16조(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라목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자활근로사업단”을 “자활노동사업단(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근로사업단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7조(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자활근로사업단”을 “자활노동사업단”으로 한다.

제18조(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자활근로사업단”을 “자활노동사업단(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근로사업단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9조(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 제2조 제목 외의 부분,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제1호,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제2호,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제3호, 제5조제2항제4호 및 제7조제2항제1호 중 “근로”를 각각 “노동”으로 한다.

제20조(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간제근로여성 및 단시간근로여성”을 “기간제노동여성 및 단시간노동여성”으로 한다.

제21조(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중 “근로계약서”를 “노동계약서(「근로기준법」 제2조제4호의 근로계약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로 한다.

제22조(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근로하는”을 “노동하는”으로 한다.

제23조(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자의 임금조건, 근로시간”을 “노동자의 임금조건, 노동시간”으로 한다.

제24조(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근로관계법령”을 “노동관계법령”으로 한다.

제25조(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근로능력“을 “노동능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근로지원인”이란”을 “노동지원인(「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근로지원인을 말한다)”이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근로지원인서비스”를 “노동지원인서비스”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근로지원인”을 “노동지원인”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근로지원”을 “노동지원”으로 한다.

제26조(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공공근로요원”을 “공공노동요원”으로 한다.

제27조(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

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근로”를 “노동”으로 한다.

제28조(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

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부터 제3항까지 중 “근로계약”을 각각 “노동계약”으로 한다.

제29조(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중 “근로조건에 있는 청년근로자”를 “노동조건에 있는 청년노동자”로 한다.

제30조(서울특별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근로”를 “노동”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31조(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목“(청년 근로 관련 교육의 실시)”를“(청년 노동 관련 교육의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청년근로자”를 “청년노동자”로 한다.

제32조(서울특별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근로를”을 “노동을”로 한다.

제33조(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청소년”을 “노동청소년”으로 한다.

제34조(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근로자의”를 각각 “노동자의”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건설기계근로자”를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건설기계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건설기계근로자””를 ““건설기계노동자””로, “근로자를”을 “노동자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같은 항 중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을 “노동계약(「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근로자를”을 “노동자를”로, “근로계약서, 근로자”를 “노동계약서, 노동자(「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노동계약서를 체결한 노동자”로 한다.

법」 제2조제4호 근로계약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근로관계”를 “노동관계”로 한다.

제6조 제목 “(근로자 고용 및 자재·장비 사용 내역 확인 등)”을 “(노동자 고용 및 자재·장비 사용 내역 확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35조(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근로”를 “노동”으로 한다.

제36조(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근로”를 “노동”으로 한다.

제37조(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근로계약”을 “노동계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근로관계”를 각각 “노동관계”로 한다.

제10조제6항 중 “근로”를 “노동”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근로관계”를 “노동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를 “노동”으로 한다.

제38조(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 중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을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중 “근로자에 대한 고용·근로조건”을 “노동자에 대한 고용·노동조건”으로 한다.

제15조제9항 중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을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으로 한다.

제39조(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

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 한다.

제40조(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라목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여성근로자”를 “여성노동자”로 한다.

제5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41조(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42조(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현장근로자”를 “현장노동자”로 한다.

제43조(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44조(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2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6조제3항 후단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45조(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

매시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46조(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47조(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

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퇴직 근로자”를 “퇴직노동자”로 한다.

제48조 삭제

제49조(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9조 제목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노동자의 권리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근로자의”를 각각 “노동자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50조(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회

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51조(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상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도시근로자”를 “도시노동자”로 한다.

제52조(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53조(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54조(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상시고용근로자”를 “상시고용노동자”로 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55조(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8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56조(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의 개정) 서울

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법상 근로자”를 “법령상 노동자(「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구성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와 그 위원은 각각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와 그 위원으로 본다.